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	
번호	

제안년월일 : 2014. 9. 24.

제안자 : 복지도시위원장

1. 수정이유

조례안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구 본청, 보건소, 동”
으로 함(안 제4조제1호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
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구 본청, 보건소, 동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4조(적용대상 공공기관)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</u></p> <p>2. ~ 4. (생략)</p>	<p>제4조(적용대상 공공기관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「<u>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</u>」에 따른 <u>구 본청, 보건소, 동</u></p> <p>2. ~ 4. (원안과 같음)</p>